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신청요강 FAQs

I. 2책 3공 관련

1. (2책 3공) 2책 3공이란 무엇인가요?

- 2021.1.1.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지원의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로 합니다(3책 5공). 다만, 3책 5공 이내에서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최대 3개까지 수행이 가능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 이내로 합니다(2책 3공).
- 상기의 "2책 3공"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3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경우 각 사업군별로 1개 사업만 신청·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공동연구군	집단연구군	성과확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 B유형) · 개인연구지원사업(신진·중견) · 공동연구지원사업(국내·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사회연구소 · 인문한국지원(HK+, HK3.0) · 사회과학연구(우수연구집단육성, 글로벌아젠다)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그룹·연구소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저번역지원 · 저술출판지원

※ 세부 내용은 본 사업 신청요강 중 "III. 신청 - 2. 신청 및 수행제한" 참고

2. (A, B유형 동시 신청) 2025년도의 경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 B유형에 동시에 신청 할 수 있나요?

- 아니오, 동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작년 신청요강 공고 시 공지되었던 행정예고에 따라, '25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A유형 또는 B유형 중 택일하여 하나의 사업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개인 및 공동연구군 동시 신청) 그렇다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 또는 B 유형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또는 B유형의 신청자는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또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중 1개 사업을 선택하여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중에서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1개 사업만 최종 선정하며, 선정 우선순위는 ① A유형 → ② 신진 또는 중견 → ③ B유형 순입니다.

※ 우선순위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후순위 사업의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됨

II. 신청 시 주의 사항

1. (신청자격-주관기관의 섭외) 주관기관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본 사업은 **국내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과제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본인이 출강 중(또는 예정)인 대학 또는 소속되어 있는 대학, 최종학위를 수여받은 대학 등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주관연구기관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직접 협의하여야 합니다.
- 해당 협의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직접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단, 재단으로 신청한 과제들의 경우, 추후 예비선정 시 소속(예정) 및 최종학위 수여대학 등 연계대학 현황에 대해 재단에서 별도로 확인 및 협의할 예정이며, 대학에서 주관기관 역할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자는 해당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과제를 수행합니다.
-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한 연구자가 선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주관기관은 재단에서 별도로 위탁·지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선정자가 해당 기관에 소속되거나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소속 및 직급 등을 부여하지 않음), 과제 관리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며,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에서와 같이 도서관이나 전산실 이용 등의 편의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주관기관) C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C 대학교를 주관연구 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예,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기 전에 해당 주관연구기관(대학 내 산학협력단 등)과 과제관리 및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3. (주관기관 추천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에 신청하려면 주관기관의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 아니오, 재단에서는 주관기관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제 관리 및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자 채용-부설연구소의 섭외) A유형 선정자는 대학 내 부설연구소에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연구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지요?

- 해당 연구소(장)의 승인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선정 되는 경우 해당 부설연구소에 채용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5. (주관기관별 신청 인원 제한) 대학(또는 연구실)별로 신청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 아니오, 없습니다.

6. (트랙별 중복지원) A-1 트랙과 A-2 트랙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동일한 사업 내에서는 1인 1과제가 원칙**이므로, 둘 중 하나의 트랙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두 개의 트랙은 연구활동 계획서 양식이 다르므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트랙에 맞는 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접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접수가 완료된 과제의 트랙 변경은 불가하며, 접수된 연구활동 계획서를 수정하실 수도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트랙별 선정과제 수) A-1 트랙과 A-2 트랙의 선정과제 수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 트랙별 선정과제 수는 처음부터 정하고 있지 않고, 매 연도별로 각 트랙의 접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연구자들이 많이 신청한 트랙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선정하고, 적게 들어온 트랙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정과제 수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결론적으로 트랙별 선정률은 A-1 트랙과 A-2 트랙이 동일합니다. 즉, **트랙 선택에 따른 선정의 유/불리가 없습니다.**

8. (신청자격-취업 여부)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취업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미취업자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자의 경우 **연구개시 전에 퇴직하는 등(휴직은 불가함)** 연구개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9. (신청자격-학위) 올 하반기에 박사학위 졸업 예정입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아니오, 신청이 불가합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신청자격-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합니까?

→ 예,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의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11. (신청자격-나이제한) 본 사업에는 왜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는,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미래의 연구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신청요건: 만 60세 이하)

12. (신청자격-발간예정 논문의 연구업적 인정 여부) 신청 마감일 이후에 발간되는 학술지(등재지)에 논문 게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 함으로써 연구업적을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 **게재예정증명서로는 연구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일까지 게재가 완료된 경우에만 업적으로 인정됩니다.

13. (신청자격-연구업적 공동저자) 연구업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맞지만, 본인이 제1저자가 아니고 공동저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업적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 최근 5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SCI(E), A&HCI·SSCI, SCOPUS)에 게재된 논문이라면,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업적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 ① 학술대회 발표논문 인정여부: 연구업적으로 불인정
② 석사/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업적 인정여부: 학위 논문은 연구업적으로 불인정
③ 저자 수에 따른 인정기준: (논문) 단독/공동저자 모두 1편으로 인정
(저·역서) 단독저자는 3편, 공동저자는 2편으로 인정
- 아울러, 연구업적의 경우 한국연구자정보(KRI)에 등록된 업적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의 연구업적을 사전에 KRI에 모두 입력 또는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14. (신청자격-기 수혜자) 박사후국내연수, 시간강사연구지원, (구)학술연구교수,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 B유형) 등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제들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연구기간 연장과제의 경우 변경된 연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함

IV. 계획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연구기간-2+3년) 연구기간이 2+3년이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 총 5년을 연구기간으로 하되, 5년을 연속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2년(1단계) 후 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3년(2단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연구활동 계획서-작성기간①) 그렇다면 연구활동 계획서는 2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5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연구활동 계획서는 총 연구기간인 5년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연구활동 계획서-작성기간②) 연구활동 계획서 양식 중, 1차년도와 2차년도는 각각 기술하도록 되어있는데, 남은 기간(3~5차년도)은 한꺼번에 기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기술하면 되는지요?

→ 연구활동 계획서 작성 시, 1단계(1차년도와 2차년도)에 대해서는 각 연차별로 작성하시되, 2단계(3~5차년도) 연구계획은 해당 기간 동안 연구자가 계획한 연구활동에 대해 한꺼번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2단계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선정 이후 단계보고서 제출 시 좀 더 구체화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단계보고서를 근거로 단계평가를 실시합니다.

4. **(연구활동 계획서-유사주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 B 유형 및 신진(또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유사한 주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2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 연구계획서(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등)가 유사·중복으로 판정되는 경우 탈락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

→ 다만, 일반적으로 한 명의 연구자가 연구하는 분야가 일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 분야가 동일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 세부사업들은 각 사업별 취지와 사업의 목표,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이 모두 다르므로, 각 사업별 목적과 지원규모에 맞게 연구활동 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연구활동 계획서-작성 언어)** 연구활동 계획서는 꼭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작성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연구자의 개인적 상황이나 학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영문으로 작성하시는 것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단, 평가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한국어 및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의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요약문의 경우 선정 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고, 연구활동 계획서 양식 중 "한글로 작성"으로 명시된 부분 역시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연구활동 계획서-블라인드 처리 관련)** 본 사업이 무기명 평가(Blind Review)로 진행됨에 따라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논문(저서) 제목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활동 계획서 양식 중 "최근 5년간 연구 업적"은 어떻게 기술해야 하나요?

→ 연구활동 계획서 양식 내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을 기술하는 부분에서도 **신청자의 정보(성명, 소속, 지도교수명, 논문 및 저서제목,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링크 등)**가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논문 및 저서의 제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연구업적의 내용, 연구수행 방법, 주요 연구성과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7. (대표연구업적) 대표 연구업적을 1편씩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세한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 연구업적이 저서인데 우편으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 제출하실 대표 연구업적 1편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과 관계없이 현재까지의 실적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박사학위 논문도 대표연구업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저서의 경우라도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해당 연구업적 1종의 원문 전체를 PDF 파일로 탑재하여야 합니다. ([편집 등이 가능한 한글 버전의 파일로는 제출 불가](#))
- 또한 본 사업은 무기명평가(Blind Review)로 진행되므로 이 때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성명, 소속, 지도교수명, 논문 및 저서제목,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링크 등)**를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논문(저서) 제목을 블라인드 처리할 경우 표지에 있는 제목뿐 아니라 페이지별 상단 또는 하단 등 해당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저서) 제목을 모두 포함합니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블라인드 처리가 미흡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8. (가산점 부여 가능여부) 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 과제의 연구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가산점 부여 대상인 '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 과제'란,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발되어 시상한 과제를 말합니다.
※ '22~'24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과제의 대표자 1인에게는 가산점(3점) 부여 (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1회)
- 가산점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상장)을 반드시 첨부하시어 연구자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25.3.21.(금)까지) 신청기관(주관기관) 공문을 통해 재단으로 가산점 사용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단, 재단으로 직접 신청한 연구자에 한해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가능

9. (선정과제 비수도권 50% 할당) '25년도에도 수도권/비수도권 50% 할당 정책이 유지되는지요?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의 경우, 선정과제의 수도권 쓸림 현상을 완화하고 학술연구의 지방 균형 발전 및 지역대학의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선정 과제 수의 50%를 비수도권(지방)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 지역 구분의 기준은 주관기관의 소재지로, [서울, 인천, 경기]인 경우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비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 지역 캠퍼스의 경우 본교 캠퍼스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분교들은 해당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 신청 당시 지방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과제들의 경우, 1단계 연구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주관기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과제들은 2단계 진입 이후부터 지방→수도권으로 주관기관 변경이 가능하며, 1단계 연구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재단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수도권으로 주관 기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한국연구재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과제를 신청하실 경우, 향후 주관연구기관은 재단에서 지정·위탁하는 기관이 됩니다. 해당 기관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수도권으로 분류되므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기타 사항

1. (간접비) 간접비는 연구자가 사용 가능한 금액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비는 전액 주관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주관연구기관의 과제 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산학협력단*)에 지급합니다.
*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에 지급하며, 연구자가 발령 받는 연구소로 지급하지는 않음**

2. (강의학점 제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강의를 해도 되나요?

- 강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본 사업 선정자는 연간 12학점(계절학기는 제외*)을 초과하여 대학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연간”의 기준은 **선정연도 2학기부터 차년도 1학기까지를 말하여(해당 연도의 1, 2학기가 아님)**, 강의학점 산정 시 자교와 타교,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모두 포함합니다.
* 계절학기의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로 강의해야 함(여름/겨울학기 각 6학점 이내)
- 단, 학교의 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여 대학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한 경우에 한해 (**해당 학칙 등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연간 18학점 이내로 강의할 수 있습니다.

3. (IRB 심의 관련) IRB 심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인간대상 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 과제 선정 후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소속기관별 절차에 따라 IRB 심의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합니다.**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IRB 심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IRB 관련 사항은 소속 기관의 IRB 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는 IRB 관련 사항에 대해 소관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문의처: 각 대학의 IRB 심의위원회 (단,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 윤리정책원에 문의 www.nibp.kr)

4. (지원분야/전공) 제 전공은 인문사회 분야가 아닙니다만,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인문 사회 분야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연구책임자의 전공과 상관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주제가 인문사회 분야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확인: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 → 사업 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학술연구분야분류 \[클릭\]](#)

5. (연구윤리교육) 과제에 선정되는 경우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과제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윤리 교육’을 기 이수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재이수 필요)

→ 연구윤리 교육운영 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연구윤리 교육신청 홈페이지: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https://alpha-campus.kr/>)

※ 이수 과정명: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 본인의 연구자번호를 바르게 입력한 뒤 이수하여야 해당 이수 정보가 정상적으로 연계됨